

#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제5조(사업)제1항 및 제2항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